

98년도중요재산취득(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)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접수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26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8. 27

다. 상 정 일 자 : 1998. 9. 26(제70회 사하구의회

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교통행정과장 황해룡)

- 우리구 신평, 장림, 다대공단내에는 많은 중소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 자재, 생산물 유통과정이 대형화물 차량수송이 그주가 되어 장림유수지 매립지내 대형화물 주차장을 설치,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수익을 도모하며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투자비 지급부담 경감 목적으로
- 장림동 1137번지내 사업비 3,877백만원, 규모 4,771.5㎡(1,446평)로 사업기간이 '98년 9월 ~ 12월까지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신평, 장림, 다대공단내 기업체 생산품, 자재수송 대형화물차의 공단도로변 주변 대형화물차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며
-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'97. 12. 31일 완료후 우리구에서 민간투자자 (주)두산건설에 지급될 공사비, 보상비등이 IMF한파 이후 토지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6% 지급이자가 15.5%로 상승되어 재정적 부담이 커서
- 주차장 특별회계중 38억 77백만원을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대형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구제정 부담경감, 재원효율적 배분 등을 위하여 본 승인의견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